



서울고등법원

제 9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9나2002849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
 원고, 피항소인 유준상



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
 담당변호사 박형진

피고, 항소인 대한체육회
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(방이동)
 대표자 이사 이기홍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 담당변호사 김용섭, 정재훈

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2. 14. 선고 2018가합107501 판결
 변 론 종 결 2019. 4. 11.
 판 결 선 고 2019. 5. 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

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를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(대표권 있는 이사)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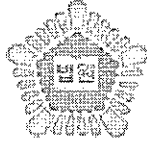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
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제6쪽 15행 다음에 "설령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는 피고 및 그 산하단체의 정관 등 규정의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, 연임의 문리적 해석상 도출되는 의미를 넘어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을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."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(다만, 분리·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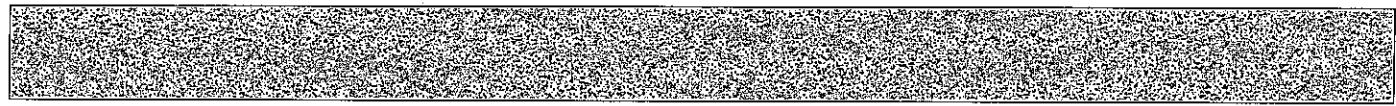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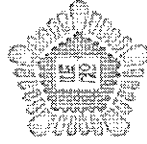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



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이창형	<u>이창형</u> 
	판사	김형진	<u>김형진</u> 
	판사	원종찬	<u>원종찬</u>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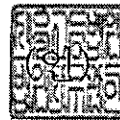


정본입니다.

2019. 5. 3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고순이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